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91
----------	-----

2018. 4. 5.(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 2018년 3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3월 22일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가. 제안이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 기능지구 과학사업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위치 및 기능(안 2조, 안 4조)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 기능 : 과학사업화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인력 양성 등

○ 위탁운영 및 운영비(안 5조, 안 7조)

- 위탁운영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
- 위탁범위 : 입주공간 지원·시설관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홍보,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 운영비 : 시설임대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전문위원 : 오문석)

○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 기능지구 과학사업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목적을 검토한 결과 제정은 타당함.

○ 다만, 안 제7조 운영비 지원과 안 제8조 이용료 등의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이하 “플라자”라 한다)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는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활용하여 산·학·연 공간적 통합으로 과학사업화를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2.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연구기관·대학·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지원

3.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4.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지원 및 시설 관리
2. 과학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홍보, 마케팅
3.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자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책무) 수탁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① 플라자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플라자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플라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플라자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목적
2.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고시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